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20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나형동(101142)	주민등록번호	810114-1796411
근무처 명칭	(주)동양	사업자등록번호	116-85-04730
세대주 여부	[V]세대주 [ ]세대원	국 적	한국 (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20.01.01 ~ 2020.12.31	감면기간	
거주구분	[V]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 (거주지국 코드 : KR)
인적공제항목 변동 여부	[V]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V]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V]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 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5		0	0	국세청 계			6,963,528		17,694,530		1,916,790	16,008,756	114,000	
		0	0	0	0	기타 계	2,586,890	565,030							2,312,800	
0	나형동	○				국세청			2,745,548							
1	근로자 본인					기타	2,586,890	565,030								
1	강영숙	○				국세청			663,840				485,100	180,700		
1	541014-2796316					기타										
1	나문영	○				국세청			2,604,640				1,431,690			
1	520809-1796421					기타										
3	임혜연	○				국세청			501,240		1,267,530			809,382		
1	840413-2042325					기타										
4	나태양	○				국세청			448,260		16,427,000			15,018,67	114,000	
1	150120-3036214					기타									2,312,800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구분	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3월	2,165,930	1,858,010	305,709			53,900	
	4~7월	14,348,398	5,738,430	16,293,334		227,420	222,200	
	그 외	22,811,690	7,643,358	10,989,608		153,000	397,850	
기타 계	3월	70,400						
	4~7월	232,100						
	그 외	534,400						
국세청	3월	98,300	756,550	281,909			52,650	
	4~7월	5,318,896	1,884,107	16,230,784		110,970	204,100	
	그 외	8,523,873	2,084,128	10,869,871		16,800	352,850	
기타	3월	70,400						
	4~7월	232,100						
	그 외	534,400						
국세청	3월	369,150						
	4~7월	563,850						
	그 외	1,207,950		36,500				
기타	3월							
	4~7월							
	그 외							
국세청	3월	455,250	112,480	6,100				
	4~7월	3,672,570	512,394					
	그 외	5,223,320	521,170	54,037				
기타	3월							
	4~7월							
	그 외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3월	2,165,930	1,858,010	305,709			53,900	
	4~7월	14,348,398	5,738,430	16,293,334		227,420	222,200	
	그 외	22,811,690	7,643,358	10,989,608		153,000	397,850	
기타 계	3월	70,400						
	4~7월	232,100						
	그 외	534,400						
국세청	3월	1,243,230	988,980	17,700			1,250	
	4~7월	4,793,082	3,341,929	62,550		116,450	18,100	
	그 외	7,856,547	5,038,060	29,200		136,200	45,000	
기타	3월							
	4~7월							
	그 외							
국세청	3월							
	4~7월							
	그 외							
기타	3월							
	4~7월							
	그 외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란에는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소득세법 §50 ① 3 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1950. 12. 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2,670,300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2,670,300		
Ⅲ.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2,586,890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565,030	전액	
		보험료 계					3,151,920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0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0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0		
				30년 이상			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 대출			0		
				기타 대출			0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3,977,067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기타 대출		0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Ⅳ.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0	납입액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0		
	투자조합 출자 등	2018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0		
		2019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0		
		2020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0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0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40,162,918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15,239,798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7,588,651		
		④ 도서·공연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0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380,420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673,950		
		계(①+②+③+④+⑤+⑥)					84,045,737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0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0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V. 세액 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 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6,963,528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6,963,528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1,916,790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7,694,530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16,008,756				
				의료비 계		19,611,32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1 명)	유치원·학원비 등	2,426,800	1명당300만원			
				초·중·고등학교(0 명)	공납금		1명당300만원			
				대학생(대학원불포 0 명)	공납금		1명당900만원			
				장애인 (0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2,426,800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또는 25% 또는 30%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0% 또는 12%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 년 01 월 27 일

신고인 나형동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 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금액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 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x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x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x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x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x 100분의 40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x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x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x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x 100분의 60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x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x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x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x 100분의 6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x 100분의 8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4. 공제한도 :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8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②+③에 해당하는 금액중 작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각 항목별 연간 1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 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1.상 호	(주)동양	2.사업자등록번호	1168504730
	3.성 명	나형동	4.주민등록번호	810114-1796411
	5.주 소	(033-56)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80 (불광동, 미성아파트) 3동 505호 (전화번호 :)		
	6.사업장 소재지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여의도동) 4층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작성방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2015년 이후 가입)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 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월세액 · [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1.상 호	(주)동양	2.사업자등록번호	1168504730
	3.성 명	나형동	4.주민등록번호	810114-1796411
	5.주 소	(033-56)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80 (불광동, 미성아파트) 3동 505호 (전화번호 :)		
	6.사업장 소재지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여의도동) 4층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7.임대인 성 명 (상 호)	8.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9.유형	10.계약 면적(㎡)	11.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12.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13.연간 월세액(원)	14.세액 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9.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7, 기타:8

※ 12.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15.대주(貸主)	16.주민등록번호	17.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18.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22.공제금액
				19.계	20.원금	21.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23.임대인 성 명 (상 호)	2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25.유형	26.계약 면적(㎡)	27.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28.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29.전세 보증금(원)
					개시일	종료일	

※(25)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7 기타:8

※(26)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작성방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 · 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 · 원리금상환액과 소득 · 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9),(25)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29)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20.3.13.>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나형동	생년월일	1981.01.14
근 무 처 명 칭	(주)동양	사업자등록번호	1168504730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내·외국인 구분	(2) 관계	(3) 성명	(4) 생년월일	자료 구분	(5)-1 소 계 ((6)+(9)+(12)+(15)+(18)+(21))	(6) 신용카드 (3월)	(9)직불·선불카드등 (3월)	(12)현금영수증 (3월)	(15)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3월)	(18)전통시장 사용분 (3월)	(21)대중교통 이용분 (3월)
					(5)-2 소 계 ((7)+(10)+(13)+(16)+(19)+(22))	(7) 신용카드 (4~7월)	(10)직불·선불카드등 (4~7월)	(13)현금영수증 (4~7월)	(16)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기재) (4~7월)	(19)전통시장 사용분 (4~7월)	(22)대중교통 이용분 (4~7월)
					(5)-3 소 계 ((8)+(11)+(14)+(17)+(20)+(23))	(8) 신용카드 (그 외)	(11)직불·선불카드등 (그 외)	(14)현금영수증 (그 외)	(17)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기재) (그 외)	(20)전통시장 사용분 (그 외)	(23)대중교통 이용분 (그 외)
1	0	나형동	1981.01.14	국세청 자료	1,189,409	98,300	756,550	281,909			52,650
					23,748,857	5,318,896	1,884,107	16,230,784		110,970	204,100
					21,847,522	8,523,873	2,084,128	10,869,871		16,800	352,850
				그밖의 자료	70,400	70,400					
					232,100	232,100					
					534,400	534,400					
1	1	나문영	1952.08.09	국세청 자료	573,830	455,250	112,480	6,100			
					4,184,964	3,672,570	512,394				
					5,798,527	5,223,320	521,170	54,037			
				그밖의 자료							
1	1	강영숙	1954.10.14	국세청 자료	369,150	369,150					
					563,850	563,850					
					1,244,450	1,207,950		36,500			
				그밖의 자료							
1	3	임혜연	1984.04.13	국세청 자료	2,251,160	1,243,230	988,980	17,700			1,250
					8,332,111	4,793,082	3,341,929	62,550		116,450	18,100
					13,105,007	7,856,547	5,038,060	29,200		136,200	45,000
				그밖의 자료							
(5)-1 합 계 액					84,045,737	40,162,918	15,239,798	27,588,651	0	380,420	673,9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20.3.13.> (앞쪽)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24)신용카드 사용분 (3월) 공제금액 ((6)×30%)	(25)신용카드 사용분 (4~7월) 공제금액 ((7)×80%)	(26)신용카드 사용분 (그 외) 공제금액 ((8)×15%)	(27)직불카드등 사용분 (3월) 공제금액 ((9)+(12))×60%	(28)직불카드등 사용분 (4~7월) 공제금액 ((10)+(13))×80%	(29)직불카드등 사용분 (그 외) 공제금액 ((11)+(14))×30%	(30)도서·공연 등 사용분 (3월) 공제금액 ((15)×60%)	(31)도서·공연 등 사용분 (4~7월) 공제금액 ((16)×80%)	(32)도서·공연 등 사용분 (그 외) 공제금액 ((17)×30%)

(33)전통시장 사용분 (3월) 공제금액 ((18)×80%)	(34)전통시장 사용분 (4~7월) 공제금액 ((19)×80%))	(35)전통시장 사용분 (그 외) 공제금액 ((20)×40%))	(36)대중교통 사용분 (3월) 공제금액 ((21)×80%)	(37)대중교통 사용분 (4~7월) 공제금액 ((22)×80%)	(38)대중교통 사용분 (그 외) 공제금액 ((23)×40%)	(39)공제제외금액 계산		
						(39)-1 총급여	(39)-2 최저사용금액 [((39)-1)×25%]	(39)-3 공제제외금액

(40)공제가능금액 [(24)~(38)합계 ((39)-3)]	(41)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30만원, 280만원, 330만원과 ((39)-1)×20%중 적은 금액]	(42)일반 공제금액 ((40)와 (41)중 적은 금액)	(43)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40)>(41)인 경우에 (40)-(41) 과 (33)+(34)+(35)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44)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40)>(41)인 경우에 (40)-(41)-(43) 과 (36)+(37)+(38) (한도: 100만원)중 적은 금액]	(45)도서·공연 추가 공제금액 [(40)>(41)인 경우에 (40)-(41)-(43)-(44) 과 (30)+(31)+(32) (한도: 100만원)중 적은 금액]	(46)최종 공제금액 ((42)+(43)+(44)+(45))

(39)-3 계산

구 분	계산식	(39)-3
(8) ≥ ((39)-2)	((39)-2)×15%	
(6)+(8)+(11)+(14)+(17)≥ ((39)-2) >(8)	(8)×15% + {((39)-2) - (8)}×30%	
(6)+(8)+(11)+(14)+(17)+(20)+(23)≥ ((39)-2) > (6)+(8)+(11)+(14)+(17)	(8)×15% + ((6)+(11)+(14)+(17))×30% + {((39)-2) - ((6)+(8)+(11)+(14)+(17))}×40%	
(6)+(8)+(9)+(11)+(12)+(14)+(15)+(17)+(20)+(23)≥ ((39)-2) >(6)+(8)+(11)+(14)+(17)+(20)+(23)	(8)×15% + ((6)+(11)+(14)+(17))×30% + ((20)+(23))×40%+ {((39)-2) - ((6)+(8)+(11)+(14)+(17)+(20)+(23))}×60%	
((39)-2) > (6)+(8)+(9)+(11)+(12)+(14)+(15)+(17)+(20)+(23)	(8)×15% + ((6)+(11)+(14)+(17))×30% + ((20)+(23))×40%+((9)+(12)+(15))×60% +{((39)-2) - ((6)+(8)+(9)+(11)+(12)+(14)+(15)+(17)+(20)+(23))}×8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21 년 01 월 27 일

신청인 : 나형동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1)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2)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사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6), (7), (8), (9), (10), (11), (12), (13), (14)란에서 차감하고 "(21) ~ (23)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6) ~ (23)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6) ~ (23)신용카드"란, "(9) ~ (11) 직불・선불카드등"란, "(15) ~ (17) 도서・공연사용분"란, "(18) ~ (20) 전통시장사용분"란, "(21) ~ (23) 대중교통이용분"란은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2월, '20년 8~12월) 분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소득공제대상금액"란 (9), (10), (11), (12)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12) ~ (14)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 이하인 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2월, '20년 8~12월) 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12) ~ (14)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39)-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41) 20년 귀속의 경우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8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30만원입니다.
11. 도서・공연 사용분과 도서공연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9. 3. 20.>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 명	나형동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810114-1796411
③상 호	(주)동양	④사업자등록번호	1168504730

(2020)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주민등록번호	⑥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 액	⑫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
520809-1796421	O			1		1,431,69	X
541014-2796316	O			1		485,100	X
840413-2042325	X			1		1,267,53	X
150120-3036214	X			1		16,427,00	X
		합 계				19,611,32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01 월 27 일

제출자 나형동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